

#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## 1. 목적

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「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)를 구성,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2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
- 1)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, 팀장, 파트장 등 관련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유관부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.

## 3. 심의 대상

- 1) 가격결정심의 : 직전사업년도의 하도급대금의 10%이상인 거래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
- 2) 업체 등록 및 취소 심의 : 기존 거래 협력사, 신규등록 협력사 등

## 4. 심의 안건

- 1) 가격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 
하도급 협력사에 대해 거래기본계약서 작성,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가격결정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
  -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 -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등

※ 가격결정 심의는 건별 온라인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그룹(또는 파트)의 임원은 결재 권한을 위원에게 위임 할수도 있음. 단, 월 1회 오프라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 여부를 재검증한다.

- 2)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 
하도급거래 협력사(신규등록 협력사 포함)에 대해 등록심의, 등록 취소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 및 탈락업체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등을 심의한다.
- 3) 기타 하기의 사항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.  
부당한 특약 조건 설정 여부,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여부,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등

## 5. 운영

- 1) 내부 심의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한다
- 2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3)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보관한다.